#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345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허 영·박지원·한병도

임호선 · 서영교 · 박 정

주철현 • 박상혁 • 민형배

전재수 · 박정현 · 이연희

이기헌 • 전용기 • 소병훈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듈러 건축공법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 기여와 고용 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함

특히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등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건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모듈러주택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모듈러주택이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모듈러주택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끝으로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고 모듈러주택에 대한 대국민인식전환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1조 등).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중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업화공법"을 "모듈러공법"으로,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을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같다)을 모듈러주택(이하 "모듈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모듈러주택"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모듈러주택"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모듈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1조제1항에 따라 모듈러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8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모듈러주택의 인정에 관

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화주택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공업화주택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된 모듈러주택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중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6절 모듈러주택의 인정 등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제51조(모듈러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 -----모듈러공법-----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 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으로 하 이 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같다)을 모듈러주택(이하 "모듈 러주택"이라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 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시9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 공업화주택
- ③ <u>공업화주택</u>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 에 따라 <u>공업화주택</u>을 인정받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공업</u> 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성능으로 <u>공업화주택</u>을 건설한 경우
- 제53조(<u>공업화주택</u>의 건설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u>공업화주택</u>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
  할 수 있다.

<u>모듈러주택</u> 2
2.         모듈러주택         ③ 모듈러주택
 제52조( <u>모듈러주택</u> 의 인정취소) -
<u>모듈러주택</u>
<u>모듈</u> 러주택
<ol> <li>(현행과 같음)</li> <li>모듈러주택</li> </ol>
제53조( <u>모듈러주택</u> 의 건설 촉진)
①
<u>모듈러주택</u>

② <u>공업화주택</u>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 고 있는 자가 <u>공업화주택</u>을 건 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3 조·제4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④ (생 략) <u><신 설></u>

(2) <u>모뉼러주택</u>
<u>모듈리주택</u>

③ 제51조제1항에 따라 모듈러 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 1항에 따른 모듈러주택의 인정 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